

# 남한 내 북한 저작권 논쟁중

**직접 거래 없어 시비 가리기 어려워**

**창구 단일화해 저작권 계약·감시해야**

최근 북한이 남한 출판사의 북한 저작물 저작권 시비에 대해서 판권계약관계를 명확히 밝힌 공증소의 확인서를 발급해 북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94년 북한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와 정식 판권계약을 맺고 북한판 『동의보감』을 국내에서 출간한 여강출판사에게 저작권을 중개해준 이순동씨(전 여강출판사 대표)가 지난해 5월 같은 제목의 책을 펴낸 법인문화사(대표 김근중)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자신이 남한 내 판권을 가진 책을 무단으로 배낀 혐의가 있는 출판사 대표와 이 책의 국역위원회로 참여한 한의대 교수 21명을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12월 “여강출판사가 북한과 정식계약을 체결했음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어 고소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황이다.

## 북한, 개인의 지적 재산권 인정해

결국 고소인 이씨가 북한 측에서 판권을 위임 받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는 길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지난해 9월 25일 북한의 평양시 공증소가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의 계약확인서를 공증해준 것. 이 공증확인서는 북한이 남한과의 계약사실을 확인해준 공증문서로는 해방 이후 최초다.

최근 『주간동아』(제294호, 7월 26일자)가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북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북한은 저작



2001년 〈서울국제도서전〉의 북한책 특별전시장 모습.

권뿐만 아니라 개인 저작권자의 재산권도 법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저작권법을 제정한 사실이 외부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4월 5일 개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 직후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회의에서 올해 예산과 가공무역법, 감문법, 저작권법 등 경제 관련 법률 3건을 승인했다.

대외 개방 확대를 대비한 사전 조치 6장 48조 항으로 된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제13조)고 규정해 저작권에 인격권과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제23조). 또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제16조)고 규정해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 린접권’, 즉 2차적 저작물도 보

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제31조). 저작권 또는 저작 린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제46조), 이 법을 어겨 저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제47조)고 돼 있다.

## 남북한 저작권 교류는 과도기 단계

여강출판사 사건과 관련해 계약확인서를 공증해준 것도 북한내 저작권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강출판사 이재연 대표는 “북한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남한 쪽에서 북한 저작권에 대해 손쓰기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순동씨만 해도 중국 심양에 체류하면서 북한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남한에 중계해주는 상황이다. 저작권과 관련해 북한과 남한의 공식적인 창구는 아태평화위원회지만, 이는 주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사업만을 주관할 뿐이다. 소규모 사업체로서는 아직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셈이다. 이대표는 북한의 상황이 과도기적 단계라고 진단한다. 개별 사업장에 자율권이 완전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저작권과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 장현태 과장은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출판물을 교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한에서 출판되는 북한저작물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과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직접적인 남북한 출판교류를 위해 준비를 해왔지만 남북한 정세변화에 따라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정부나 단체가 나서 남북한 저작권 단일화 창구를 마련해서 확실하게 교류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장근 기자